

신남방

태국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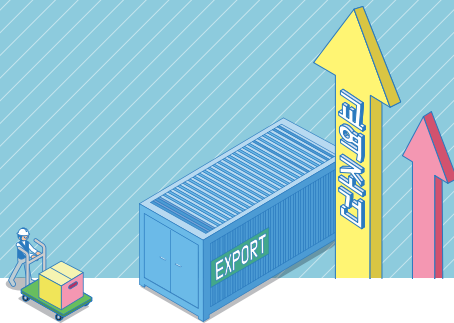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9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07
03. 비관세장벽 현황	310
04. 수출 애로사항	31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322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태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 식품 시장규모는 560억 달러(한화 약 73조 3,993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277억 달러(한화 약 36조 2,215억 원)로 전체 49.3%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86억 달러(한화 약 11조 2,398억 원)로 신선식품 중 가장 큰 규모(15.7%)를 차지하며, 뒤이어 채소류(13.3%), 낙농품(10.3%)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84억 달러(한화 약 37조 1,778억 원)로 집계됨
 -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가장 큰 비중(18.4%)을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103억 달러(한화 약 13조 5,061억 원)로 집계됨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5.8	50.0	49.2	52.7	56.0	100.0	6.4
신선식품	22.7	24.8	24.3	26.0	27.7	49.3	6.4
- 육류	7.1	7.7	7.5	8.0	8.6	15.7	6.7
- 채소류	6.0	6.5	6.4	6.8	7.3	13.3	6.3
- 낙농품	4.5	5.0	4.9	5.2	5.6	10.3	7.6
- 과일 및 견과류	4.2	4.6	4.5	4.9	5.1	9.3	5.1
- 유제품	0.9	1.0	1.0	1.0	1.1	1.9	5.0
가공식품	23.1	25.2	24.9	26.7	28.4	50.7	6.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7	9.4	9.2	9.8	10.3	18.4	4.8
- 스낵류	6.0	6.7	6.7	7.2	7.8	14.0	8.3
- 편의식품	3.2	3.5	3.4	3.6	3.8	6.8	6.1
- 스프레드 및 당류	1.9	2.0	2.0	2.1	2.2	3.9	5.3
- 소스 및 향신료	1.5	1.6	1.6	1.7	1.8	3.2	7.7
- 펫푸드	0.9	1.0	1.1	1.2	1.3	2.4	9.9
- 영유아용 식품	0.9	1.0	1.0	1.1	1.1	1.9	3.8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7,170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연령대별 인구 수는 0-54세까지는 균등한 편이나,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4.6%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 인구 수는 3,689만 명(약 51.5%), 남성 인구 수는 3,481만 명(48.5%)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2022년 가구 수는 1,65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3,800달러(한화 약 498만 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26.3%를 차지하며, 전년 수준과 동일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22년 기준 799.8달러(한화 약 104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394.7달러(한화 약 51만원)로 집계되며, 가공식품 소비액은 405.1달러(한화 약 53만원)로 신선식품 소비액보다 다소 낮음

* 신선식품 중 육류 소비액이 122.5달러(한화 약 16만원)로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 중에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소비액이 147.2달러(한화 약 19만원)로 가장 높음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59.1	717.4	704.0	752.8	799.8	100.0	6.2
신선식품	327.0	355.7	347.6	371.4	394.7	50.5	6.3
- 육류	101.9	110.6	107.8	114.9	122.5	15.7	6.6
- 채소류	85.9	93.5	91.4	97.7	103.7	13.3	6.1
- 낙농품	65.3	71.2	69.9	74.8	80.4	10.3	7.4
- 과일 및 견과류	61.0	66.5	65.0	69.4	73.0	9.3	5.1
- 유지류	12.9	14.0	13.6	14.5	15.2	1.9	4.7
가공식품	332.1	361.7	356.4	381.4	405.1	50.7	6.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4.7	135.3	131.9	140.6	147.2	18.4	4.7
- 스낵류	87.0	96.0	95.2	103.2	111.6	14.0	8.1
- 편의식품	45.8	49.6	48.3	51.4	54.5	6.8	5.9
- 스프레드 및 당류	27.0	29.1	28.2	29.9	31.5	3.9	5.4
- 소스 및 향신료	21.4	23.2	22.6	24.1	25.8	3.2	7.3
- 펫푸드	13.0	14.6	15.8	17.3	19.0	2.4	9.7
- 영유아용 식품	13.3	13.9	14.4	15.0	15.6	2.0	4.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54.7kg으로 가장 큰 편임

* 낙농품 소비량 35.0kg, 과일 및 견과류 23.8kg, 육류 19.9kg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연간 유지류 소비량은 2.8kg 수준임

- 가공식품 소비량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낵류, 스프레드 및 당류 순임

* 1인당 연간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은 87.5kg으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됨

* 1인당 스낵류 소비량은 19.4kg, 스프레드 및 당류 소비량은 14.6kg으로 각각 집계되었고, 펫푸드 소비량이 13.8kg, 편의식품 12.9kg, 소스 및 향신료 11.8kg, 영유아용 식품 0.9kg 수준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52.9	54.0	52.9	53.5	54.7	2.1
	- 낙농품	30.2	32.0	32.3	33.5	35.0	4.5
	- 과일 및 견과류	22.8	23.3	23.0	23.3	23.8	2.3
	- 육류	17.3	18.7	18.6	19.2	19.9	3.5
	- 유지류	2.8	2.9	2.8	2.8	2.8	1.1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1.4	84.6	84.4	86.2	87.5	1.6
	- 스낵류	16.8	17.7	17.9	18.6	19.4	4.5
	- 스프레드 및 당류	14.8	14.9	14.5	14.4	14.6	1.7
	- 펫푸드	10.9	11.6	11.9	13.1	13.8	6.0
	- 편의식품	12.2	12.6	12.5	12.6	12.9	2.3
	- 소스 및 향신료	10.6	11.1	11.2	11.4	11.8	3.5
	- 영유아용 식품	0.8	0.8	0.8	0.9	0.9	2.3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 423억 922만 4,000달러(한화 약 55조 4,251억 원)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수출 상위 국가는 중국(23.5%), 일본(10.3%), 미국(9.9%)이며, 뒤이어 인도네시아(4.1%), 말레이시아(4.0%), 캄보디아(3.4%) 등 주로 아시아 국가로 수출함
 - *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99억 5,614만 달러(한화 약 13조 425억 원)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 * 對일본 수출액은 43억 5,002만 4,000달러(한화 약 5조 6,985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對미국 수출액은 42억 403만 3,000달러(한화 5조 5,073억 원)로 전년 대비 8.2% 증가함
 - *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4% 증가한 17억 3,591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2,740억 원)이며,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16억 9,316만 달러(한화 약 2조 2,180억 원)로 23.2% 증가함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0% 증가한 10억 8,052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4,155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4,107,822	34,435,156	33,848,842	37,555,238	42,309,224	100.0	12.7	5.5
1 중국	4,367,901	5,251,474	6,339,096	9,686,624	9,956,140	23.5	2.8	22.9
2 일본	4,216,307	4,270,947	4,062,924	4,060,410	4,350,024	10.3	7.1	0.8
3 미국	3,343,499	3,493,000	4,001,762	3,886,974	4,204,033	9.9	8.2	5.9
4 인도네시아	1,698,450	1,588,710	1,117,245	989,492	1,735,913	4.1	75.4	0.5
5 말레이시아	1,174,038	1,164,455	956,229	1,374,813	1,693,160	4.0	23.2	9.6
6 캄보디아	1,173,554	1,385,956	1,512,610	1,395,012	1,454,846	3.4	4.3	5.5
7 인도	330,950	360,420	311,580	885,343	1,387,159	3.3	56.7	43.1
8 미얀마	1,273,389	1,083,792	1,045,809	1,248,604	1,247,464	2.9	-0.1	-0.5
9 베트남	2,021,679	1,927,361	1,869,081	1,425,490	1,244,204	2.9	-12.7	-11.4
10 한국	717,090	854,185	657,259	745,294	1,080,524	2.6	45.0	10.8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쌀(정미)(8.4%), 두리안(7.4%), 닭고기 조제품(6.9%) 등이 있음
 - * 쌀(정미)의 수출액은 35억 4,798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6,479억 원)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함
 - * 두리안의 수출액은 31억 4,843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1,245억 원)로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닭고기 조제품의 수출액은 29억 1,302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8,161억 원)로 전년 대비 26.2%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34,107,822	34,435,156	33,848,842	37,555,238	42,309,224	100.0	12.7	5.5
1 쌀(정미)	4,991,478	3,741,619	3,273,839	2,955,201	3,547,987	8.4	20.1	-8.2
2 두리안	934,350	1,465,534	2,098,666	3,420,041	3,148,437	7.4	-7.9	35.5
3 닭고기 조제품	2,414,475	2,587,794	2,415,938	2,308,499	2,913,028	6.9	26.2	4.8
4 카사바 전분	1,334,944	1,219,459	1,132,091	1,631,142	1,759,017	4.2	7.8	7.1
5 사탕수수 기타	1,355,234	1,310,676	866,317	875,749	1,556,804	3.7	77.8	3.5
6 카사바	881,165	527,896	683,354	1,267,735	1,487,020	3.5	17.3	14.0
7 사탕수수당	1,230,329	1,651,918	875,826	630,065	1,480,426	3.5	135.0	4.7
8 조제식료품	1,273,625	1,417,996	1,323,883	1,347,088	1,465,616	3.5	8.8	3.6
9 절단한 냉동 닭고기	654,587	772,010	872,112	879,760	1,124,702	2.7	27.8	14.5
10 팜유(조유)	152,999	105,765	113,955	632,993	1,121,221	2.2	13.1	5.9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전체 농식품 수입액은 171억 1,245만 4,000달러(한화 약 22조 4,173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3% 성장함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19.5%), 중국(14.4%), 미국(9.1%)이며, 브라질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3억 3,650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3,708억 원)임
 - *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4억 7,151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2,377억 원)임
 - * 미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15억 5,856만 달러(한화 약 2조 417억 원)로 집계됨
 - 한국산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2억 9,551만 달러(한화 약 3,871억 원)로 집계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894,908	13,466,997	13,762,881	16,055,142	17,112,454	100.0	6.6	7.3
1 브라질	1,543,358	1,553,854	2,003,625	3,012,540	3,336,508	19.5	10.8	21.3
2 중국	1,751,064	1,921,897	1,956,520	2,096,166	2,471,518	14.4	17.9	9.0
3 미국	2,257,960	2,036,639	1,731,532	1,788,086	1,558,560	9.1	-12.8	-8.9
4 호주	618,874	642,307	700,744	1,109,158	1,229,756	7.2	10.9	18.7
5 뉴질랜드	476,765	508,047	508,680	575,128	752,815	4.4	30.9	12.1
6 인도네시아	533,530	509,864	639,704	757,628	719,647	4.2	-5.0	7.8
7 베트남	487,274	481,674	579,433	573,631	713,279	4.2	24.3	10.0
8 미얀마	179,381	311,918	427,309	601,086	708,535	4.1	17.9	41.0
9 인도	390,711	392,321	364,845	495,139	640,144	3.7	29.3	13.1
10 말레이시아	430,717	440,133	470,666	477,156	560,318	3.3	17.4	6.8
14 한국	288,513	270,708	288,628	314,258	295,510	1.7	-6.0	0.6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 기타(11.8%), 대두유 추출 유박(9.6%), 조제식료품(5.1%) 등이 있음

*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0억 1,792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6,435억 원)로 집계됨

* 대두유 추출 유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6억 3,532만 달러(한화 약 2조 1,423억 원)로 집계됨

* 조제식료품의 수입액은 전년 유사 수준인 8억 7,034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1,401억 원)로 집계됨

* 뒤이어 밀 기타(3.6%), 카사바(3.3%), 옥수수 기타(2.6%)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894,908	13,466,997	13,762,881	16,055,142	17,112,454	100.0	6.6	7.3
1 대두 기타	1,154,996	1,272,984	1,614,301	2,273,943	2,017,929	11.8	-11.3	15.0
2 대두유 추출 유박	1,255,095	1,251,811	1,013,225	1,368,352	1,635,320	9.6	19.5	6.8
3 조제식료품	610,901	679,381	807,195	869,293	870,342	5.1	0.1	9.3
4 밀 기타	702,352	767,865	758,259	764,605	622,913	3.6	-18.5	-3.0
5 카사바	269,724	267,314	419,096	420,315	565,089	3.3	34.4	20.3
6 옥수수 기타	32,050	158,313	282,261	403,527	436,932	2.6	8.3	92.2
7 무첨가 우유· 크림	180,065	172,621	185,342	221,865	302,246	1.8	36.2	13.8
8 사과	190,403	211,691	258,648	266,610	253,821	1.5	-4.8	7.5
9 고체 우유	136,181	162,520	182,701	213,484	250,446	1.5	17.3	16.5
10 신선 포도	150,257	145,739	147,790	177,998	247,042	1.4	38.8	13.2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억 6,441만 2,000달러(한화 약 3,464억 원)로, 연평균 9.6%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함

- 농산물 수출액이 2억 2,971만 5,000달러(한화 약 3,009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86.9%를 차지하며,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함

- 주요 수출 품목에는 건조 김(8.6%), 라면(7.0%), 조제식료품 기타(2.9%), 소스 조제품 기타(2.1%), 신선 딸기(2.0%) 등이 있음

* 건조 김은 3,805만 3,000달러(한화 약 498억 원)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086만 9,000달러(한화 약 404억 원)로 집계됨

* 조제식료품 기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278만 1,000달러(한화 약 167억 원), 소스 조제품 기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18만 2,000달러(한화 약 120억 원)로 집계됨

* 신선 딸기 수출액은 898만 2,000달러(한화 약 118억 원)로 전년 대비 1.1% 증가함

한국의 對태국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83,514	197,034	220,838	260,356	264,412	100.0	1.6	9.6
농산물	172,252	187,123	208,876	239,814	229,715	86.9	-4.2	7.5
축산물	5,804	4,089	4,555	11,571	25,623	9.7	121.4	45.0
임산물	5,458	5,822	7,407	8,971	9,074	3.4	1.1	13.6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태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83,514	197,034	220,838	260,356	264,412	100.0	1.6	9.6
1 건조 김	79,593	60,122	39,910	38,379	38,053	8.6	-0.8	-16.8
2 라면	19,265	19,017	26,823	29,613	30,869	7.0	4.2	12.5
3 조제식료품 기타	4,885	4,821	8,023	11,226	12,781	2.9	13.9	27.2
4 소스 조제품 기타	3,341	3,780	6,782	7,847	9,182	2.1	17.0	28.8
5 신선 딸기	5,824	6,727	7,727	8,887	8,982	2.0	1.1	11.4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식약청 제품 등록	- 수입 전 태국 식품의약품에 수입식품 등록 필수 - 태국 식약청 식품 분류에 따라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 - 식품 분류 유형 : ① 일반 식품 ② 표준식품 ③ 표준라벨 부착식품 ④ 특별 통제식품	태국 수입업체
수입허가 취득	- 태국 수입 전 수입허가서 취득 필요 - 취득방법 : 태국 공중보건부의 SKY NET 시스템을 통해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입허가신청서 ② 사업자ID·여권 사본 ③ 사업자 거주지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 ⑥ 식품 참고등록증 사본 ⑦ 장소 허가증 ⑧ 참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태국 수입업체
수입신고	- E-Custom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완료 - 제출서류 : ① 수입허가증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식품안전증명서류 ⑧ 자유판매증명서	태국 수입업체
수입검사	- 수입신고서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물품 위험도에 따라 ① 녹색 ② 적색라인으로 통관채널을 구분 - 녹색라인 : 저위험화물, 검사 없이 자동으로 반출허가 - 적색라인 : 고위험화물, 물리적 검사 실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위험도에 따라 샘플검사 진행 - 저위험군 : COA 미제출 화물에 대해 무작위 샘플검사 실시 - 위험군 : COA 미제출 화물에 대해 높은 빈도로 무작위 샘플검사 실시 - 고위험군 : 샘플 채취 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검사 실시	태국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납부는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 또는 전자지불 시스템 (e-Bill System) 이용	태국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태국 수출 시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 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태국은 태국 당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태국으로 △복숭아 △포도 △사과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속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태국으로 신선 과채류 수출 시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따라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성분 분석을 진행해야 함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태국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태국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허가 취득	●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식약청에 수입허가 취득 필요 - 수입허가 취득 대상 식품을 수입하는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식약청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SKYNET)을 통해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태국 수입허가 취득 제출서류 <table> <tr><td>① 수입허가 신청서</td></tr> <tr><td>② 사업자ID·여권 사본</td></tr> <tr><td>③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td></tr> <tr><td>④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td></tr> <tr><td>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td></tr> <tr><td>⑥ 식품 참고등록증 사본</td></tr> <tr><td>⑦ 장소 허가증</td></tr> <tr><td>⑧ 참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등</td></tr> </table> - 발급된 수입허가는 3년간 유효함	① 수입허가 신청서	② 사업자ID·여권 사본	③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	⑥ 식품 참고등록증 사본	⑦ 장소 허가증
① 수입허가 신청서								
② 사업자ID·여권 사본								
③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								
⑥ 식품 참고등록증 사본								
⑦ 장소 허가증								
⑧ 참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등								
식약청 제품 등록	● 태국 수입업체는 특별통제식품 유형의 경우 사전에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록 필수 - 태국 식약청은 식품 유형을 ① 특별통제식품 ② 표준식품 ③ 표준라벨부착식품 ④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며,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함							
	태국 식약청의 식품 유형 <table> <tr> <td>특별 통제식품</td><td>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높음 • 식약청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td></tr> <tr> <td>표준식품</td><td>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식약청 규정 준수 여부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td></tr> <tr> <td>표준라벨 부착식품</td><td>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필요 • 빵, 현미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td></tr> <tr> <td>일반 식품</td><td>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약청 식품 등록 불필요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td></tr> </table>	특별 통제식품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높음 • 식약청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표준식품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식약청 규정 준수 여부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표준라벨 부착식품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필요 • 빵, 현미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일반 식품
특별 통제식품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높음 • 식약청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표준식품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식약청 규정 준수 여부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표준라벨 부착식품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필요 • 빵, 현미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일반 식품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약청 식품 등록 불필요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식약청 제품 등록

식약청 등록 시 식품 유형별 제출서류·수수료·처리기간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식품
공통 서류	- 식품수입허가서(라이선스) 사본 - 제조시설 증명서 - 제조과정 설명서		
필요 서류	- 신청서(Orr.17 또는 Sorbor.3) - 라벨링 사전승인식품 - 100% 공식 제품 - 제품 패키징 (외부+내부) - 라벨 및 판매용도 (비매용, 소매용) - 유통기한 - 실험분석서 - 제품 샘플	- 신청서(Sorbor.7)와 공통서류 - 일부식품* 제출서류 - 신청서(Sorbor5) - 100% 공식 제품 - 제조과정 설명서 - 제품 패키징(외부+내부) - 라벨 및 판매용도 (비매용, 소매용) - 유통기한	신청서 (Sorbor.7)와 공통 서류
수수료	3,000~5,000밧	200밧	200밧
처리 기간	35~90 영업일	2 영업일	2 영업일
식품 분류	(5개 품목) 식품첨가물, 조제분유, 유아식품, 체중조절식품, 영유아용 식품 보충제	(38개 품목) 유제품, 지방 및 식용기름, 초콜릿, 알칼리성 계란, 잼, 시리얼, 과자, 쿠키, 양념/조미료, 물/음료수	(12개 품목) 착향료, 꿀, 사탕, 빵, 젤라틴, 일부 향신료, 조사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예외	표준식품 중 로얄젤리 함유 식품, 식품보충제, 특수목적식품	식품보조제, 유제품, 통조림 및 캔식품, 음료수는 20~35일 소요되며 수수료 2000밧	-

* 표준식품의 경우 식약청 등록을 필수로 하지 않음

수입신고

-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E-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전송
 - E-Customs System은 전송된 수입신고서에 대해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수입신고번호 및 세금 납부번호를 생성하며, 이후 검사대상선별시스템(Selectivity Profile System)은 수입신고의 검증 결과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Red Line or Green Line)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함
 - 세관신고서 전송 시 수입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등 각종 통관 관련 서류를 동봉함

태국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허가증	② 세관 신고서
③ 원산지 증명서(원본)	④ 상업송장
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⑥ 제품 카탈로그, 성분표 등 기타 관련 문서
⑦ 포장명세서 등	-

-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위험도를 바탕으로 화물검사 방식 결정
 - 전자세관 시스템은 제출된 수입신고서 및 서류를 바탕으로 식품의 위험도를 결정하며, 위험도에 따라 수입검사 진행 여부가 결정됨
 - 화물검사 방식은 녹색 라인(검사 제외), 적색 라인(화물 개봉)으로 구분됨

태국 화물 검사 방식

녹색 라인	- 화물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상태로, 검사가 면제됨 -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검역 없이 자동으로 반출 허가
적색 라인	- 위험도가 높은 화물로, 검사 대상임 -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

수입 식물 품목별 검역 유형

수입검사

금지 품목 (Prohibited materials)	- 실험 및 연구용에 한해서만 수입 허용 - 방콕 국제공항, 방콕항, 방콕 식물검역소 등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 비료, 식물 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서류, 이끼
제한 품목 (Restricted materials)	- 식물위생증명서 동봉 필요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싻,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 개사탕수수속(Saccharum)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기름오동속(Aleurites) 식물, 타로, 소맥, 대두, 녹두(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비규제 품목 (Unprohibited materials)	- 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 해당하며 별도의 수입 허가 및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검사를 위해 수입 시 검역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됨 - 병해충 검출 시 검역처리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음

- 태국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위험도에 따라 샘플검사 진행
 -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품목으로 구분되며, 검사 내용이 상이함

수입검사	신선 과채류 위험도별 수입검사 유형	
	저위험군 (Low Risk)	- 위험군·고위험군 품목을 제외한 품목 -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며, 수출국 발행 잔류농약성분분석표(CO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 샘플검사가 실시됨 -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됨
	위험군 (High Risk)	- 채소류 : 완두콩, 샐러리, 고수, 차이나이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CO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 샘플검사가 높은 빈도로 실시됨 - 샘플 수집 후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며,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고위험군 (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수출업체,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검사 - 샘플 채취 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수입검역 완료 후 관세를 납부한 뒤 물품 반출 - 전자 세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세 등의 납부를 위한 일련번호가 발급됨 -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전자지불 시스템(e-Bill System)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녹색 라인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출허가가 이루어지며, 적색 라인의 경우 화물의 물리적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출이 가능함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태국 사례별 관세 납부 방식	
	은행 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 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 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함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함
	수입 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 세금 및 관세 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함. -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 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FTA 체결현황

태국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SEAN)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실류 :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밤,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고구마, 수삼, 콜라비, 비트, 마늘쫑, 적양배추, 깻잎
 -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한국산 복숭아·포도·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태국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 특히, 감귤은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참외(멜론)는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함(수출 시즌 전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파, 양파,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튜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 축산물

- 효소제

2. 수출 불가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참다래, 자두, 살구, 망고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VGJYYQ.do?clear=1>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Good Mart(태국)
업체 유형	현지 수입과일 유통업체
담당자명	Ms.Bow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국산 수입 과일 중에서는 딸기,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배, 사과 등 고품질 과일이 인기 있으며 계절과 제품 공급에 따라 판매하는 과일의 종류가 달라짐
 - 현지의 작은 마트에서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잘 팔리는 과일이나 제품만을 주문하며, 수요가 적으면 제품을 직수입하지 않음
 - 가장 인기 있는 가공식품은 다양한 한국 브랜드 라면이며, 김치, 된장, 고추장도 수요가 높음
- 태국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시 주의사항
 - 태국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입 시 적법한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식물위생 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물검역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보건당국, 태국 공중 보건부 등 태국 정부 기관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태국 보건부는 대마초 또는 대마 일부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 해당 공고를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으로 채택하여 고시함
 -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올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0.2%를 초과하지 않고 마약물질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마초 및 대마에서 유래한 칸나비디올 추출물은 마약물질법 부속서 5에 명시된 마약물질 분류에 대한 보건부 고지에서 면제되며, 신식품으로 인정되어 식품 사용이 허용됨
- 태국은 돼지열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5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산 돼지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태국 보건부는 2020년 5월 8일 신선과채류 수입 시 태국 공증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의거하여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COA)를 제출하도록 고시함. 수출국 담당 정부 관리기관, ISO/IEC 17025 인증 획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샘플 검사를 진행함
- 2020년 태국 보건부는 살충제 성분 중 5가지를 위험 물질로 추가하고, 최대허용량(MRL)을 없애는 대신 Zero-Tolerance 방식(불검출 원칙)의 규제를 적용함. 불검출 원칙 적용 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 한도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은 수입, 유통, 판매, 구매가 금지됨
- 수정된 천연 광천수 표준(CODEX STAN 108-1981)에서 규정하는 특정 오염물질 최고 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천연 광천수에 관한 보건부 공고를 수정함. 본 공고에서는 천연 광천수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며, 포장된 천연 광천수에 포함된 중금속 및 미생물 허용치가 규정됨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MOAC)는 2023년 1월 신선 블루베리속 과실 수입금지를 일부 완화하고, 냉동제품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보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s://food.fda.moph.go.th/food-law/
식품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https://food.fda.moph.go.th/food-law/category/additives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food.fda.moph.go.th/food-law/category/additives

통보문 개정 현황(2023년)

• 블루베리 수입제한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태국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신선 블루베리속(genus Vaccinium spp.) 과실을 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해놓고 있음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MOAC)는 2023년 1월 신선 블루베리속 과실 수입금지를 일부 완화, 냉동제품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개정안 '수입금지 식물 지정 및 수입금지 제외기준' 을 통보함 • 수입금지 제외기준 1. 식용 목적으로 가공된 식물(processed plant for consumption) : 식물 그 자체 또는 그 일부로 간주되는 상태의 식물 유래 제품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게 생산된 제품을 뜻함. 또한, 식물 병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상업적 가공 방법을 거쳐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 2. 과일 전체 또는 과육에 씨가 부착되거나 씨가 없는 과육의 경우 수출 전 최소 7일 이상 - 18°C 또는 그 이하에서 동결시켜야 함 3. 화물마다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NPPO)으로부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증명서에는 "This consignment was continuously maintained at core temperature - 18°C or below for a period of 7 days or longer"라고 부기되어야 함
통보일	2023. 01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42

2. TBT⁴⁾

- 태국 식품의약청은 2021년 6월 거짓 정보를 활용한 식품 광고를 방지하고, 사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식품 광고를 감독하기 위해 식품 광고 규칙 B.E.2021을 발표함. 해당 규칙은 식품 섭취 경고 문구 표시, 품목별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함
- 식품용 용기 및 조리기구에 대한 규제
 -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에 관한 부처 규정안”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함
 -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식품용 비닐봉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식품 포장용 및 전자레인지 재가열용 비닐봉투에 대한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표준은 안전 요구사항, 재료 물질, 라벨링 등을 규정함
 - 태국 산업표준연구소가 제안한 TIS 1136-2559(2016)이 식품 포장용 신축성 랩으로 채택됨
 - 식품과 접촉하는 불소 중합체가 코팅된 조리기구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규정은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됨
 - 태국 산업표준원은 일반 식품과 뜨거운 식품용 무색 종이 및 보드 용기에 적용되는 특정 화학물질, 농도를 제한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된 모든 식품 조리기구가 안전 요건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장관령 초안을 통보함
- B.E. 2522 식품법에 따라 발행된 라벨링에 관한 보건부 공고안
 - 식품라벨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용어의 사용 조건에 관한 2019년 3월 19일에 통보된 규정안이 철회됨
 - 태국 보건부는 ‘영양소 라벨링’에 관한 공고의 개정을 제안함. 개정안은 영양소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식품목록, 그 목록의 정의, 라벨 및 영양소 표시의 형식 및 조건, 적용 제외 대상 등을 포함함
 - 태국 보건부는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안함. 이 제안은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 기타 기능 강조 표시, 질병 위험 감소 강조 표시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기준과 조건을 제시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태국 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공고의 개정을 제안함. 개정안은 판매용으로 제조, 수입된 사전포장식품은 라벨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과 기준을 규정함
- 태국에서 제조, 판매, 소유되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위험 및 경고 문구는 소형포장용 제품라벨 요소 목록에 추가됨
- 태국 보건부는 2005년 12월 15일 통보된 ‘식품 보조제’에 관한 공고(제293호)의 개정을 제안함. 제안된 개정안은 비타민·미네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보조제의 경우, 비타민·미네랄 함유량이 영양소 라벨링 공고에서 규정하는 일일섭취량(THAI RDI) 기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함
- 태국 보건부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젤라틴 및 젤리’에 관한 공고(제263호)의 개정을 제안함. 제안된 개정안은 직경이나 가장 넓은 부분의 대각선 길이가 4.5cm 이하의 작은 용기에 포장된 글로코만난·곤약 가루·토란 가루·뿌리 작물 가루 함유 젤라틴 및 젤리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2024년 보건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가공되지 않은 신선육의 라벨링 표시 및 홍보 규정을 발표함. 신선육 라벨 표시 및 홍보 규정에 따라 신선육 라벨 표시에 프리미엄/골드/스페셜/엑스트라/슈프림 또는 유사한 문구의 사용 시 제조 회사의 품질 기준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2023년 8월 15일 ‘식품 가공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고가 공표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규정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s://en.fda.moph.go.th/ cat2-health-products/category/ cat-food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 제품명 • 중량 • 유통기한	• 인공조미료 • 업체정보 • 성분	• 알레르기 정보 • 식품 일련번호 • 식품첨가물
라벨 표기사항 (권장항목)	경고사항, 보관방법, 조리방법 등 영유아용 식품이나 특정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설명 등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라벨 내용은 태국어로 표기해야 하며, 영어도 가능하나, 세부 내용은 태국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함 • 수입된 식품은 영어 또는 태국어를 제외한 언어를 포함할 경우 태국어로 명확하게 번역되어야 하며, 식품준수 승인을 위해 증빙서류 필요	
	제품명	• 식품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식품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표기 • 식품명은 상포명과 같이 표기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글씨의 크기를 다르게 표기해야 함 • 원산지를 포함한 식품의 특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생산 공정 또는 재료, 외양을 함께 표기해야 함 • 포장의 전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표시	
	중량	• 고체는 미터법에 따라, 액체는 미터법에 따라 표기 • 기타 식품은 순 중량으로 표기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경우, 일, 월, 년 순으로 표시 • '제조됨'이나 '만료됨'의 문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포장의 하단이나 다른 부분에 표시하는 경우 위치를 표시해야 함	
	영양성분	•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 라벨 전체 공간의 35cm² 미만인 경우, 제품을 희석한 경우, 식품첨가물이나 향료를 제외한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주요 성분만을 표기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 식품의 성분으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 특정 이름 또는 국제 번호 INS를 사용하여 정의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특정 이름과 색소, 향미 증진제 등의 기능을 표시해야 함	
	업체정보	• 생산업체,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입자' 또는 '의해 수입됨' 문구를 사용하여 생산자의 이름과 국가를 표시해야 함	
	식품 일련번호	• 태국 식약청 등록으로 발급받은 식품 일련번호, 식품 생산시설 번호를 표기해야 함	
	인공 조미료	• 인공 조미료가 포함된 경우 그를 알 수 있도록 '천연 인공 향 첨가', '인공 향 첨가', '천연 향료 추가됨'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	
	사용(섭취)방법	•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식품 알레르기 정보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성분정보를 표기할 것 • 주 성분이 우유나 땅콩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된 식품에는 표시 면제	
	기타	•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경고나 보관방법, 조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 초콜렛, 주류 등은 별도 라벨링 규정 준수	
		• 신선식품의 효능과 품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되기 전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자료 : 태국 보건부(MOPH : Ministry of Public Health)

•비스킷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보이즈 크래커 딸기맛	
원재료명	50.0% 밀가루 23.0% 식물성 기름 21.0% 설탕, 3.0% 와인스톤 가루 발포제(INS 500(ii), INS 450(i)) 자연향료 이미수화알부민(INS 322(ii)) 산도조절제(INS 270, INS 330) 천연색소(INS 120)	
내용량	24g x 12봉	
제조일/유통기한	포장에 표기되어 있음(일/월/년)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고온하고 다습한 환경을 피해서 보관	
제조사	몬데 닛신(태국) 주식회사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가루, 우유, 대두 렉시틴 및 보리 함유	
영양성분 정보	24g(1봉지 당) 기준	
	열량(Kcal)	120kcal
	지방	6g
	단백질	2g
	탄수화물	15g
	당류	6g
	나트륨	125mg

● 비건 캔햄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식물성 바삭한 돼지고기	
원재료명	물 38.00% 식물성 단백질 30.00% 밀 10.00% 노랑콩 10.00% 백미 5.00% 곤약 2.00% 이스트 추출물 1.50% 맥아 추출물 1.50% 오렌지 식초 1.00% 아이오딘 강화소금 0.50%, 비트루트 0.25%, 석류 0.25%	
내용량	400g	
유통기한 및 섭취기한	포장에 표기(일/월/년)	
보관 권장 사항	18℃ 이하로 냉동보관 재냉동 지양 제품을 개봉하거나 해동한 경우에는 냉장고(0-4℃)에 보관 48-72시간 내에 사용	
제조사	meat AVATAR	
영양성분 정보	한 팩당 섭취량 1/4봉지(100g) 일일 권장량의 백분율 또는 중량표시	
	열량(Kcal)	130kcal
	지방	2%
	단백질	17g
	탄수화물	13g
	나트륨	40mg
알레르겐 주의성분	글루텐 및 대두 함유	

인증

[필수 인증]

• 태국 식약청(FDA) 허가

- 태국 식약청(FDA) 허가는 태국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수출 시 필수로 취득하여야 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대규모 제조 업체는 제조허가서, 소규모 제조업체는 제조 번호를 부여받음

인증명	태국 식약청(FDA) 허가	
발행 및 검사기관	태국 식약청(FD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제품등록서 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비용	200~5,000 바트	
소요기간	3일(특별통제식품은 35~9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허가 승인여부 결정 → 식품일련번호 발급 → 승인된 서류 화신	

• GMP

- 태국 공중보건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생산 안전에 관한 인증인 GMP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입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GMP에 상응하는 HACCP, ISO 등의 인증을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인증명	GMP	
발행 및 검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식품 안전관리 계획서, 인증 신청서 등	
비용	5만원	
소요기간	14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및 평가 → 판정 → 인증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GMP, HACCP, ISO 22000 인증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HACCP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ISO 22000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선택 인증]

• CICOT(태국 할랄 인증)

- CICOT 인증은 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임. 2015년 기준 태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품의 25%가 할랄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음. 본 인증은 취득 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60일 전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음. CICOT의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MUI, 말레이시아 JAKIM 등 주요 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과 교차 인증이 가능함

인증명	CICOT(태국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CICOT(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할랄 매뉴얼, 원재료 목록, 제품 라벨 샘플 등	
비용	약 11,500 ~ 21,500 바트	
소요기간	약 60일	
절차	서류제출 →(신규사업자) 할랄 교육 → 서류 승인 → 현장실사 및 원재료 검사 → 적합 판정 → 인증발급	

No.	제목	태국 상표 등록 시 현지 에이전트 필요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상표권 등록
			유형*	TBT
1				
주요 내용	- 상표 등록 시 태국 내 영구적인 사업자 주소가 요구되므로,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함 - 상표 등록 신청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해야 함 - 국내 기업이 태국에 상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상표출원신청서 - 정확한 색상의 상표등록증 견본 - 해외 신청자의 회사 진술서 사본 -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된 여권 사본 - 서명된 위임장(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태국어 번역문을 기재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함) - 상표등록절차 - 상표 예비 검색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 검색 - 상표 신청 - 등록 심사 : 약 3개월 소요. 고유한 식별력이 있고 등록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 등록거부 또는 출원 계시 통보 - 상표 공고 :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함 - 등록증 발급 : 등록 결정 후 발급받으며, 상표등록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등록 상품이 5개 이하일 경우 상품 및 서비스당 1,000바트(THB), 등록 상품이 5개를 초과할 경우 9,000바트(THB) - 태국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국으로, 프로토콜 회원국 국민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상표권을 보호함			
	애로·건의 사항	태국에서 상표 등록은 태국인만 할 수 있어서 태국 내에서 브랜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기타	※ 상표 예비 검사, 상표 등록 절차, 신청서(태국 지식재산권청) https://www.ipthailand.go.th/			

No.	제목	태국 FDA 식품 분류에 따른 등록 요건	해당국가	태국
2			관련품목	건강기능식품
			유형*	식품등록절차
주요 내용	• 태국 FDA 규정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 보조제는 FDA 등록 번호를 표기하고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함 • 태국은 식품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제품, 일반식품’ 4가지로 분류되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 분류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부적 품목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과 표준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제품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식품
	공통 서류	• 식품수입허가서(라이센스) 사본 • 제조시설 증명서 • 제조과정 설명서		
	필요 서류	• 신청서(Orr.17 또는 Sorbor.3) • 라벨링 사전승인식품 - 100% 공식 제품 - 제품 패키징 (외부+내부) - 라벨 및 판매용도 (비매용, 소매용) - 유통기한 - 실험분석서 - 제품 샘플	• 신청서(Sorbor.7)와 공통서류 • 일부식품 제출서류 - 신청서(Sorbor5) - 100% 공식 제품 - 제조과정 설명서 - 제품 패키징 (외부+내부) - 라벨 및 판매용도 (비매용, 소매용) - 유통기한	• 신청서(Sorbor.7)와 공통 서류
	수수료	3,000~5,000฿	200฿	200฿
	처리 기간	35~90 영업일	2 영업일	2 영업일
	식품 분류	(5개 품목) 식품첨가물, 조제분유, 유아식품, 체중조절식품, 영유아용 식품 보충제	(38개 품목) 유제품, 지방 및 식용기름, 초콜릿, 알칼리성 계란, 잼, 시리얼, 과자, 쿠키, 양념/조미료, 물/음료수	(12개 품목) 착향료, 검, 사탕, 빵, 젤라틴, 일부 향신료, 조사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예외	표준식품 중 로얄젤리 함유 식품, 식품보충제, 특수목적식품	식품보조제, 유제품, 통조림 및 캔식품. 음료수는 20~35일 소요되며 수수료 2000฿	-
애로·건의 사항	• 식품 분류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 식품 제품 등록 절차가 상이해 복잡함			
기타	-			

No.	제목	태국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원료 사용 기준의 제한	해당국가	태국																								
3			관련품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형*	SPS																								
주요 내용	• 태국 보건복지부 고시 《식품 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 식품은 태국 식품의약품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고시안에 명시된 미생물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10⁶CFU/g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야 함 ※ 태국 식품의약품처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 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23종 <table><tr><td>Bacillus coagulans</td><td>Lactobacillus crispatus</td></tr><tr><td>Bifidobacterium adolescentis</td><td>Lactobacillus gasseri</td></tr><tr><td>Bifidobacterium animalis</td><td>Lactobacillus johnsonii</td></tr><tr><td>Bifidobacterium bifidum</td><td>Lactobacillus paracasei</td></tr><tr><td>Bifidobacterium breve</td><td>Lactobacillus reuteri</td></tr><tr><td>Bifidobacterium infantis</td><td>Lactobacillus rhamnosus</td></tr><tr><td>Bifidobacterium lactis</td><td>Lactobacillus salivarius</td></tr><tr><td>Bifidobacterium longum</td><td>Lactobacillus zeae</td></tr><tr><td>Bifidobacterium pseudolongum</td><td>Propionibacterium arabinosum</td></tr><tr><td>Enterococcus durans</td><td>Staphylococcus sciuri</td></tr><tr><td>Enterococcus faecium</td><td>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td></tr><tr><td>Lactobacillus acidophilus</td><td>-</td></tr></table>				Bacillus coagulans	Lactobacillus crispatus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Lactobacillus gasseri	Bifidobacterium animalis	Lactobacillus johnsonii	Bifidobacterium bifidum	Lactobacillus paracasei	Bifidobacterium breve	Lactobacillus reuteri	Bifidobacterium infantis	Lactobacillus rhamnosus	Bifidobacterium lactis	Lactobacillus salivariu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zeae	Bifidobacterium pseudolongum	Propionibacterium arabinosum	Enterococcus durans	Staphylococcus sciuri	Enterococcus faecium	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	Lactobacillus acidophilus	-
	Bacillus coagulans	Lactobacillus crispatus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Lactobacillus gasseri																										
	Bifidobacterium animalis	Lactobacillus johnsonii																										
	Bifidobacterium bifidum	Lactobacillus paracasei																										
	Bifidobacterium breve	Lactobacillus reuteri																										
	Bifidobacterium infantis	Lactobacillus rhamnosus																										
	Bifidobacterium lactis	Lactobacillus salivariu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zeae																										
	Bifidobacterium pseudolongum	Propionibacterium arabinosum																										
	Enterococcus durans	Staphylococcus sciuri																										
	Enterococcus faecium	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																										
	Lactobacillus acidophilus	-																										
애로·건의 사항	• 태국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와 한국 식약처가 고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가 다름. 따라서 태국으로 제품 수출 시, 고시하는 균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제품에 사용된 균주는 안전성 평가를 받거나 태국에서 고시하는 균주만 사용하여 태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 생산해야 함																											
기타	-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유아용 두유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태국 FDA 등록 규정 확인 자문

조사 결과

• 식품의 분류

- 태국은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청(FD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식품의 수입허가, 제품의 등록 및 표시허가 등을 담당함
- 태국은 식품을 크게 구제적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제품, 일반식품으로 나누어 관리 통제하고 있음
- 두유의 경우 표준식품군에 해당하나, 영유아용 조제식의 경우 구제적 통제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수입자는 수입 이전에 FDA의 식품등록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태국내 현존하는 법인이며,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식품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 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99 - 기타	-	2202.9920	-	

-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 제출 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2. 인스턴트 면류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육류와 해산물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수입 가능 여부
- 수출 절차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제품에서 보완해야 할 기타 사항

조사 결과

- 법/규정 관련 근거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인스턴트식품(No.210)”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영양성분라벨(No.182)”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 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902.3040	30%/CIF value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 제출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육류 및 해산물 함유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

-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및 해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통제는 태국 농산부, 수산부가 검역 통제 주체이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태국 FDA가 관리함
- 수입 제한 시 원재료 품명(돼지고기, 소고기 등) 또는 부위(내장, 뼈 등)으로 구분하여 제한함
- 가공식품 사용 원료로서의 육류, 가금류, 해산물에 대한 기준치는 없음
- 본 제품의 경우, 1차 원재료로 해당 재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 일부분이며 나머지 재료는 2차 원재료로 조리 가공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태국 수입에는 문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수출자 준비 서류

- BL or AWB(선적선화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ertificate Origin(원산지증명서)
 - *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양허세를 적용 시 FORM AK 발행 필요
- HACCAP or GMP(제조공장의 식품제조품질 인증서)

●수입자 준비 서류

- Foods Import License(식품수입허가)
- Foods Registration permit(태국 FDA 식품 등록증)

●수출 절차 검토

- 태국 수입 이전에 태국 FDA에 수입할 식품에 대하여 허가/등록하고 식품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본 제품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210호 인스턴트식품 규정에 의거 등록을 진행하면 되며 등록된 제품은 수입통관 이전 규정에 의거한 라벨을 식품에 부착하여야 함
- 식품등록은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태국 수입파트너를 통해 진행해야 함. 이때 수입자에게 COI(제조성분표), 제조공정도, 제조공장의 품질증명서(HACCAP, GMP, ISO22000 중 최소 1개 이상), 제품 카탈로그, 패키징 도안 등을 전달해야 함
 - * 등록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완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검토 회신까지 45일이 추가 소요됨
-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공중보건부 고시 제182호 영양성분 라벨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수출 절차 검토

- Ready to cook 제품의 경우, 용기채 가열 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국 FDA에서는 용기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함
- 이와 관련된 안전성 평가 자료가 있다면 등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문 결론

- 검토 제품은 성분상 태국 FDA 등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태국 FDA에서는 식품 포장용기의 오염 또는 제조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균 검출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현미 스낵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태국 식품법에 의한 식품등록 규정 및 라벨링 규정 확인

조사 결과

• 법/규정 관련 근거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밀폐용기 포장식품(No.355)”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일부 즉석섭취식품의 라벨 표기(No.305)”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스낵의 효소스테비아 사용 허용량”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	1904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904.90 - 기타	-	1904.9010	30%/CIF value	

-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 제출 시 5%/CIF value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성분 검토

- 검토 제품은 천연 곡물 등 건강한 식재료를 원료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성분상 태국 식품등록에 불허되는 성분은 없음
- 단, 효소스테비아는 스낵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식품 1Kg 당 17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함량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식품 등록 시 검사 규정

- 검토 제품은 “밀폐용기 포장식품(No.355)” 규정에 따라 식품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포장용기의 중금속 검출 검사 및 미생물 검출 검사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증명이 필요함

● 금속 용기 식품의 중금속 검출 기준

- 식품 1Kg 당 250mg 이하의 주석
- 식품 1Kg 당 100mg 이하의 아연
- 식품 1Kg 당 20mg 이하의 구리
- 식품 1Kg 당 1mg 이하의 납
- 식품 1Kg 당 0.5mg 이하의 수은
- 식품 1Kg 당 0.02mg 이하의 해산물 및 기타 식품

● 미생물 검출 기준

- 성장하는 미생물은 섭씨 30도 또는 섭씨 55도의 식품에서 1g당 1,000개 이하로 검출되어야 함
- 효모와 곰팡이균은 식품 1g 당 100개 이하여야 함
- MPN(Most Probable Number) 방법으로 검사하여 식품 1g당 3개 미만의 대장균이 검출되어야 함

● 라벨링 규정

- 전체 영양성분표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표기하여야 함
- 총 열량, 총 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을 영양성분에 표기해야 함
- 1회 제공량 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2mg 이상인 경우 초과 콜레스테롤량을 표기해야 함
- 스낵의 경우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십시오”라는 캠페인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자문 결론

- 태국 FDA에서는 식품 포장 용기의 오염 또는 제조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균 검출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벨링의 경우, 라벨링에 수입업체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향후 수출 바이어 확정 후 추가 라벨링 자문을 통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